

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 3483호

2018. 9. 20. (목)

함께
서울



서울특별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01호

보호수 지정해제 고시

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,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 하고자, 산림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9월 20일
서울특별시장

1. 보호수 지정해제 수목내역

구분	지정번호	위 치	수 종	주수	수령(년)	규 격		토지 소유자	비고
						수고(m)	흉고 둘레(m)		
지정해제	서23-4	강남구 삼성동 172-56 외 1	느티나무	1	400	11	4.2	이재호	

2. 지정해제 사유 : 수목 고사로 인해 지정 목적 상실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02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(한양대학교)

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(1975.5.1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로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86호(2002.3.25.)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96호(2010.11.11.) 및 2012-30호(2012.2.9.) 및 2017-471호(2017.12.28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성동구 행당동 17일대 한양대학교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9월 20일
서울특별시장

1. 변경결정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, 성동구